

Vol.1563



법원공보

2019. 3. 1. FRI

● 목 차

내규	323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325	법관 및 법원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내규 일부개정내규
	330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업무처리를 위한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
예규	332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337	집행관 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339	대외기관의 자료제출 등 요청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341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343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345	대법원규칙등 제·개폐시 문서 파일의 송부지침 일부개정예규
	349	소송수행보고예규 일부개정예규
	354	대법원예규문서 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신법령 목록	356	

● 내 규

◎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법원행정처내규 제90호 2019. 2. 18. 결재)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의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을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또는 4급 이상의 법원공무원”으로 하고, “법원행정처 소속 4급 이하의 법원공무원”을 “법원행정처 소속 5급 이하의 법원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제3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 ① (생략)
- ② (생략)
- ③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중에서, 서기는 법원행정처 소속 4급 이하의 법원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 지명한다.
- ④ (생략)
- ⑤ (생략)

개정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 ①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③ -----

--- 법관 또는 4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
----- 5급
이하의 법원공무원 ----- .
- ④ (현행과 같음)
- ⑤ (현행과 같음)

◎ 법관 및 법원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내규 제501호 2019. 2. 19. 결재)

법관 및 법원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간사는 기획제2심의관이 된다”를 “간사는 법관 또는 4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2]

국내위탁교육훈련대상 자격 요건(제6조제2항 관련)

구분	훈련 과정	자 격 요 건
장기 훈련	국내주간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급 이상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중 <u>선발 연도의 12. 31. 기준으로</u> 실 근무기간이 3년(단, 8급은 5년) 이상인 사람 ○ <u>선발 연도의 12. 31. 기준으로</u> 만 45세 이하인 사람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디지털포렌식학 전공 석사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관 중 <u>선발 연도의 12. 31. 기준으로</u> 실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국내대학원 석사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관 및 8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중 <u>선발 연도의 12. 31. 기준으로</u> 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u>법관 중 선발 연도의 12. 31. 기준으로</u> 만 55세 이하인 사람 ○ <u>일반직공무원 중 선발 연도의 12. 31. 기준으로</u> 만 52세 이하인 사람
	국내사이버대학교 학사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부 소속 공무원(직급 제한 없음)으로서 <u>선발 연도의 12. 31. 기준으로</u> 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중 학사학위 미취득자 ○ <u>선발 연도의 12. 31. 기준으로</u> 만 53세 이하인 사람
	KAIST 지식재산대학원 미래전략대학원 석사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관 중 <u>선발 연도의 12. 31. 기준으로</u> 실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국내외국어연수(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급 이상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중 <u>선발 연도의 12. 31. 기준으로</u> 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u>선발 연도의 12. 31. 기준으로</u> 만 57세 이하인 사람
단기 훈련	국내대학원 전문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관 중 <u>상반기 과정은 선발 전연도의 12. 31. 기준으로</u>, <u>하반기 과정은 선발 연도의 6. 30. 기준으로</u> 각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일반직 3급 이상 중 법원행정처 소속인 사람
	국내외국어연수(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급 이상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중 <u>선발 연도의 12. 31. 기준으로</u> 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비고

1. 장기훈련의 석사과정 및 국내외국어연수 훈련대상자는 선발 연도의 12. 31.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국내·외 연수를 최근 5년(국내사이버대학교 학사과정 훈련 경력인 경우 1년) 이내에 다녀온 적이 없는 사람(다녀온 연수의 수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으로 한다. 다만,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디지털포렌식학 전공 석사과정은 예외로 한다.

2. 외부교육훈련기관에서 정하는 별도의 자격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적용한다.
3. 실 근무기간은 법원에 실제 근무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및 제72조의 휴직 기간은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육아휴직기간(자녀 1명인 경우 최대 1년까지, 둘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과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포함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제4조 (국내위탁교육훈련심의위원회)

- ① ~ ⑤ (생략)
-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회 제2심의관이 된다.

- ⑦ ~ ⑧ (생략)

[별표 2]

국내위탁교육훈련대상 자격 요건(제6조 제2항 관련)

구분	훈련 과정	자격 요건
장기 훈련	국내주간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급 이상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중 실 근무기간이 3년(단, 8급은 5년) 이상인 사람 ○ <u>공고일을 기준으로</u> 만 45세 이하인 사람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디지털포렌식학전공 석사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관 중 실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국내대학원 석사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관 및 8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중 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52세 이하인 사람
	국내사이버대학교 학사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부 소속 공무원(직급 제한 없음) 중 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중 학사학위 미취득자 ○ 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53세 이하인 사람

개정안

제4조 (국내위탁교육훈련심의위원회)

- ① ~ ⑤ (현행과 같음)
- ⑥ ----- 간사는 법관 또는 4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⑦ ~ ⑧ (현행과 같음)

[별표 2]

국내위탁교육훈련대상 자격 요건(제6조 제2항 관련)

구분	훈련 과정	자격 요건
장기 훈련	국내주간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급 이상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중 <u>선발 연도의 12. 31. 기준으로</u> 실 근무기간이 3년(단, 8급은 5년) 이상인 사람 ○ <u>선발 연도의 12. 31. 기준으로</u> 만 45세 이하인 사람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디지털포렌식학전공 석사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관 중 <u>선발 연도의 12. 31. 기준으로</u> 실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국내대학원 석사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관 및 8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중 <u>선발 연도의 12. 31. 기준으로</u> 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u>법관 중 선발 연도의 12. 31. 기준으로</u> 만 55세 이하인 사람 ○ <u>일반직공무원 중 선발 연도의 12. 31. 기준으로</u> 만 52세 이하인 사람
	국내사이버대학교 학사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부 소속 공무원(직급 제한 없음)으로서 <u>선발 연도의 12. 31. 기준으로</u> 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중 학사학위 미취득자 ○ <u>선발 연도의 12. 31. 기준으로</u> 만 53세 이하인 사람

현 행

	KAIST 지식재산대학원 미래전략대학원 석사과정	○ 법관 중 실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국내외국어연수 (주간)	○ 8급 이상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중 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신 설 〉
단기 훈련	국내대학원 전문과정	○ 법관 중 실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일반직 3급 이상 중 법원행정처 소속인 사람
	국내외국어연수 (야간)	○ 8급 이상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중 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비고

1. 장기훈련의 석사과정 및 국내외국어연수 훈련대상자는 1개월 이상 국내·외 연수를 최근 5년(국내사이버대학교 학사과정 훈련 경력인 경우 1년)이내에 다녀온 적이 없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디지털포렌식학 전공 석사과정은 예외로 한다.
2. 외부교육훈련기관에서 정하는 별도의 자격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적용한다.
3. 실 근무기간은 법원에 실제 근무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및 제72조의 휴직 기간은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육아휴직기간(자녀 1명인 경우 최대 1년까지, 둘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과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포함한다.

개 정 안

	KAIST 지식재산대학원 미래전략대학원 석사과정	○ 법관 중 <u>선발 연도의 12. 31. 기준으로</u> 실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국내외국어연수 (주간)	○ 8급 이상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중 <u>선발 연도의 12. 31. 기준으로</u> 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u>선발 연도의 12. 31. 기준으로</u> 만 57세 이하인 사람
단기 훈련	국내대학원 전문과정	○ 법관 중 <u>상반기 과정은 선발 전년도</u> 의 12. 31. 기준으로, <u>하반기 과정은 선발 연도</u> 의 6. 30. 기준으로 각 실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일반직 3급 이상 중 법원행정처 소속인 사람
	국내외국어연수 (야간)	○ 8급 이상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중 <u>선발 연도의 12. 31. 기준으로</u> 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비고

1. 장기훈련의 석사과정 및 국내외국어연수 훈련대상자는 선발 연도의 12. 31.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국내·외 연수를 최근 5년(국내사이버대학교 학사과정 훈련 경력인 경우 1년)이내에 다녀온 적이 없는 사람(다녀온 연수의 수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으로 한다. 다만,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디지털포렌식학 전공 석사과정은 예외로 한다.
2. 외부교육훈련기관에서 정하는 별도의 자격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적용한다.
3. 실 근무기간은 법원에 실제 근무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및 제72조의 휴직 기간은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육아휴직기간(자녀 1명인 경우 최대 1년까지, 둘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과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포함한다.

◎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업무처리를 위한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

(법원행정처내규 제91호 2019. 2. 21. 결재)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업무처리를 위한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제2심의관”을 “법무담당관”으로 하고, “대법원경비관리대장”을 “대법원보안관리대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의 “기획제2심의관실”을 “법무담당관실”로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 ① 대법원내규 제2조제2항의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다음부터 “협의회”라고 한다)의 회원은 기획총괄심의관, 기획제2심의관, 안전관리관, <u>대법원경비관리대장</u>, 종합민원과장으로 하고, 회장은 기획총괄심의관으로 한다.</p> <p>② (생략)</p> <p>③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기획조정실 <u>기획제2심의관실</u> 서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p>	<p>제3조(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 ① --- ----- ----- ----- <u>법무담당관</u>, ----- ----- , <u>대법원보안관리대장</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법무담당관실</u> ----- ----- .</p>

예규

◎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73호 2019. 2. 14. 결재)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집행관법 시행규칙”을 “집행관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같은 조 제4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제4호 중 “고등법원 관내”를 “고등법원 관내(서울고등법원 및 수원고등법원에 속하는 법원은 같은 고등법원 관내로 본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5항) 중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제4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 ② 지방법원장은 「집행관규칙」 제2조제2항의 집행관의 직무 중 일정 업무분야로 송달사무를 지정하여 집행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행관 임명신청 당시까지 송달 실무를 처리한 경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제1항제5호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제6조에 따른 개인역량 조사의 결과와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 업무를 담당할 경력 기간을 반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 전단의 집행관 임명을 신청한 평가대상자에 대하여는 임명시 고려사항으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준 중에서 퇴직 당시 직급의 재직기간의 적용을 각각 배제하되, 제1항제5호의 기준에 중점을 둔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개인역량 조사) ① 지방법원장은 「집행관규칙」 제2조제5항에 따른 집행관 임명희망자에 대한 평가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지방법원장이 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그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면평가제 운영지침」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 지침 각 규정의 다면평가는 본조에 따른 개인역량 조사로 본다.
-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각 지방법원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 전에 각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제2조(임명예정인원) ① (생략)
 ② 법원행정처장은 집행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정원 범위 내에서 임명 가능한 각 법원 및 지원별 집행관 임명예정인원을 결정하여 이를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3조(임명) ① (생략)

〈신설〉

〈신설〉

② (생략)

1. ~ 3. (생략)

개정안

제2조(임명예정인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집행관규칙」 -----

제3조(임명)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법원장은 「집행관규칙」 제2조제2항의 집행관의 직무 중 일정 업무분야로 송달사무를 지정하여 집행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행관 임명신청 당시까지 송달 실무를 처리한 경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제1항제5호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제6조에 따른 개인역량 조사의 결과와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 업무를 담당 한 경력기간을 반영할 수 있다.

③ 제2항 전단의 집행관 임명을 신청한 평가대상자에 대하여는 임명시 고려사항으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준 중에서 퇴직 당시 직급의 재직기간을 각각 배제하되, 제1항제5호의 기준에 중점을 둔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현행

4. 당해 지방법원이 속하는 고등법원 관내에서 최근 10년 동안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 다만 춘천지방법원 및 제주지방법원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법원 관내에서 최근 10년 동안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

5. ~ 6. (생략)

③ 제2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임명희망자를 임명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생략)

⑤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 1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한다.

제4조(임명제한) ① (생략)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 6. (생략)

<신설>

개정안

4. 해당 ----- 고등법원 관내 (서울고등법원 및 수원고등법원에 속하는 법원은 같은 고등법원 관내로 본다)

----- 해당 -----

5. ~ 6. (현행과 같음)

⑤ 제4항 -----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⑦ 제4항제3호 및 제4호 -----

----- 1개월 ----- 1개월 -----

제4조(임명제한) ① (현행과 같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6. (현행과 같음)

제6조(개인역량 조사) ① 지방법원장은 집행관규칙 제2조제5항에 따른 집행관 임명희망자에 대한 평가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법원장이 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그 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 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면평가제 운영지침」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 지침 각 규정의 다면평가는 본조에 따른 개인역량 조사로 본다.

현행

개정안

- ③ 법원행정처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각 지방법원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 전에 각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집행관 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74호 2019. 2. 14. 결재)

집행관 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집행관규칙」 제2조제2항 및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집행관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 제3조제2항 후단 및 제3항의 사유를 추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제3조제2항”을 “제3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심사의 대상) ①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는 집행관임명을 희망하는자가 집행관으로서 적합한 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를 심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제5조(심사의 대상) ① ----- ----- ----- 다만, 「집행관규칙」 제2조제2항 및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집행관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 제3조제2항 후단 및 제3항의 사유를 추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 제3조제2항 각호 및 제4조 각호의 사유 해당 여부 3. (생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제3조제4항 ----- 3. (현행과 같음)

◎ 대외기관의 자료제출 등 요청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75호 2019. 2. 18. 결재)

대외기관의 자료제출 등 요청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이하 “기획제1심의관”)”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이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한다.

제5조 중 “기획제1심의관”을 “기획조정심의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자료제출 등 요청 접수 시 조치) ① 대법원,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에 자료제출 등 요청이 접수된 경우 해당 공문서의 처리과는 그 사본을 즉시 <u>법원행정처 기획제1심 의관</u>(이하 “<u>기획제1심 의관</u>”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제4조(자료제출 등 요청 접수 시 조치) ① ----- ----- ----- <u>법원행정처 기획조정</u> <u>심의관</u>(이하 “<u>기획조정심의관</u>” ----- ----- .</p>
<p>② ~ ③ (생략)</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처리 과정에서의 협의) 제4조제2항에 따라 공문서 사본을 송부 받은 사람은 <u>기획제1심 의관</u>에게 그 내용을 알려 업무처리 방향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문서의 처리과에 통지한다.</p>	<p>제5조(처리 과정에서의 협의) ----- ----- <u>기획</u> <u>조정심의관</u> ----- ----- .</p>

◎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76호 2019. 2. 18. 결재)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기획제1심의원”을 “기획조정심의원”으로 하고, “사법정책총괄심의원실 소속 판사”를 “사법지원실 소속 판사”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9조(평가위원회) ① ~ ② (생략)</p> <p>③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정보화심의관, <u>기획제1심의관</u>, 인사총괄심의관실 소속 판사, <u>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u> 소속 판사, 사법연수원 기획교수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p> <p>④ ~ ⑥ (생략)</p>	<p>제9조(평가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기획조정심의관</u>, ----- -----, <u>사법지원실</u> 소속 판사, ----- ----- ----- ----- -----</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예규 제1177호 2019. 2. 14. 결재)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법원행정처장은 스마트워크센터의 좌석 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원격근무제의 연속 이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공무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신청 및 승인) ① (생 략) ② (생 략) ③ <u>원격근무제의 이용 기간은 1인당 최대 3년으로 하되, 연속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한다.</u>	제29조(신청 및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법원행정처장은 스마트워크센터의 좌석 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원격근무제의 연속 이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공무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u>

◎ 대법원규칙등 제·개폐시 문서 파일의 송부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78호 2019. 2. 21. 결재)

대법원규칙등 제·개폐시 문서 파일의 송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호 중 “기획제2심의관실”을 “법무담당관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제2심의관”을 “법무담당관”으로 한다.

별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등록 내용 확인 요청서

20

발신 : 법무담당관

수신 : ○○ 담당관(심의관)

제·개정된 대법원규칙 등이 아래와 같이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에 등록되었습니다. 제·개정 내용의 등록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제 목	제·개정일자	등록일자

발신 : ○○ 담당관(심의관)

수신 : 법무담당관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해당란에 사인, 오류의 구체적 내용은 표 하단 또는 별지에 기재).

관리번호	제 목	오류 없음	오류 있음

※ 오류의 구체적 내용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송부대상) 대법원규칙 등의 제정 또는 개폐시에 문서 파일로 송부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5.호 (생략) 6. <u>사법정책실내규</u> 7 ~ 9.호 (생략) <p>제3조(주무과) 대법원규칙 등을 관리하는 주무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u>기획제2심의관실</u> : 대법원규칙, 대법원 내규, 대법원행정예규, 법원행정처내규 2. (생략) 3. <u>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사법정책심의관실</u> : <u>사법정책실내규</u> 4. ~ 7.호 (생략) <p>제7조(등록내용 확인) ① <u>기획제2심의관</u>은 제6조의 등록 직후 별지와 같은 확인요청서를 처리과에 송부한다.</p> <p>② 처리과는 제·개정 내용에 따라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확인요청서를 완성하여(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 오류사실을 기재) <u>기획제2심의관</u>에게 회송하고, <u>기획제2심의관</u>은 오류사항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 완성된 확인요청서를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에게 전달하여 수정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p>	<p>제2조(송부대상)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5.호 (현행과 같음) 6. <삭제> 7 ~ 9.호 (현행과 같음) <p>제3조(주무과)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u>법무담당관실</u> : ----- ----- 2. (현행과 같음) 3. <삭제> 4. ~ 7.호 (현행과 같음) <p>제7조(등록내용 확인) ① <u>법무담당관</u>----- ----- ----- .</p> <p>② ----- ----- ----- ----- <u>법무담당관</u> -----, <u>법무담당관</u>----- ----- ----- ----- .</p>

현행

[별지]

등록 내용 확인 요청서

20

발신 : 기획재2심의관

수신 : ○○ 담당관(심의관)

제·개정된 대법원규칙 등이 아래와 같이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에 등록되었습니다. 제·개정 내용의 등록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제 목	제·개정일자	등록일자

발신 : ○○ 담당관(심의관)

수신 : 기획재2심의관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란에 사인, 오류의 구체적 내용은 표 하단 또는 별지에 기재).

관리번호	제 목	오류 없음	오류 있음

※ 오류의 구체적 내용

개정안

[별지]

등록 내용 확인 요청서

20

발신 : 법무담당관

수신 : ○○ 담당관(심의관)

제·개정된 대법원규칙 등이 아래와 같이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에 등록되었습니다. 제·개정 내용의 등록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제 목	제·개정일자	등록일자

발신 : ○○ 담당관(심의관)

수신 : 법무담당관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란에 사인, 오류의 구체적 내용은 표 하단 또는 별지에 기재).

관리번호	제 목	오류 없음	오류 있음

※ 오류의 구체적 내용

◎ 소송수행보고예규 일부개정예규

(법원행정처예규 제1179호 2019. 2. 21. 결재)

소송수행보고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기획제2심의관)”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법원행정처장(법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기획제2심의관)”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법원행정처장(법무담당관)”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작성기준일로부터”를 “작성기준일부터”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국가(행정)소송사건 진행상황 보고

수 신 법원행정처장

참 조 법무담당관

제 목 소송수행보고

다음과 같이 법원 관련 국가(행정)소송사건의 진행상황을 보고합니다.

사 건 번 호	○○ 법원 ○○ 호				
사 건 명					
원 고		피 고			
소송물가액		관련기관			
접 수 일 자	1심		상소심		
※ 국가소송의 경우 청구원인을 확인한 후 아래 사건 구분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복체크 가능).					
사 건 구 분	민사집행·신청 ()	등기()	공탁()	재판 관련()	기타()
소송 종료 결과	판결 선고	선고일자		판결문송달일	
		판결요지		상소확정 여부	
		상소의견			
	소취하, 조정 기타	종료원인		종료일자	
	구상권 행사	행사 여부 (대상자, 방법)		행사금액	
첨 부 서 류					
소송수행자 소속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국가(행정)소송 현황 보고

수 신 법원행정처장

참 조 법무담당관

제 목 국가(행정)소송 현황보고

다음과 같이 20○○년 상(하)반기 법원 관련 국가(행정)소송사건의 현황을 보고합니다.

구 분	국가소송			행정소송		
접수사건	○건			○건		
진행사건	○건			○건		
확정사건	올해 접수	올해 이전 접수	국가패소	올해 접수	올해 이전 접수	행정청패소
	○건	○건	○건	○건	○건	○건
중요사건						
○○법원						

※ 작성요령

1. 접수사건란에는 해당 기간 동안 소송이 제기된 사건 수를 기재함
2. 진행사건란에는 제4조제2항의 일자 기준 미제사건 수를 기재함
3. 확정사건란에는 올해에 접수되어 해당 기간 동안 확정된 사건 수와 올해 이전에 접수되어 해당 기간 동안 확정된 사건 수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전체 확정된 사건 중 국가(행정청) 패소 사건 수를 기재함. 이때 패소는 일부 패소를 포함함
4. 중요사건란에는 국가(행정청)패소 사건, 소가가 10억 원 이상인 사건(소 제기 시 기준), 국가(행정청) 패소 시 법원에 미치는 영향이 클 사건으로 사선번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한 사건의 사건번호를 각 기재함
5. 소송수행전담팀의 경우 사건 수 및 중요사건을 「소송수행전담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송 관련 법원(지원)별로 구분하여 기재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제4조(보고방법) ① 소송수행자가 속한 각급 법원(지원)장 (「소송수행전담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경우 관할 고등 법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진행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기획재2심 의관)에게 전자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급 법원(지원)장은 해당 법원(지원)에서 수행한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반기 현황을 매년 6월, 12월 각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기획재2심 의관)에게 전자문서로 보고하되, 작성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국가(행정) 소송사건 진행상황 보고

수 신 법원행정처장

참 조 기획재2심 의관

제 목 소송수행보고

다음과 같이 법원 관련 국가(행정)소송사건의 진행상황을 보고합니다.

개정안

제4조(보고방법) ① -----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법원행정처장(법무담당관) -----

② -----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법원행정처장 (법무담당관) -----
-----, 작성기준일부터 -----
----- .

[별지 제1호 서식] 국가(행정) 소송사건 진행상황 보고

수 신 법원행정처장

참 조 법무담당관

제 목 소송수행보고

다음과 같이 법원 관련 국가(행정)소송사건의 진행상황을 보고합니다.

현행

사건번호	○○법원 ○○호				
사건명					
원고			피고		
소송물가액			관련기관		
접수일자	1심		상소심		
※ 국가소송의 경우 청구원인을 확인한 후 아래 사건 구분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복체크 가능).					
사건구분	민사(행·선정)	등기()	공탁()	재판관련()	기타()
소송종료결과	판결선고	선고일자	판결문송달일		
		판결요지	상소확정 여부		
	상소의견				
	소취하, 조정 기타	종료원인	종료일자		
구상권 행사	행사 여부 (대상자, 방법)	행사금액			
첨부서류					
소송주행자 소속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국가(행정)소송 현황 보고

수신 법원행정처장

참조 기획재2심의관

제목 국가(행정)소송 현황보고

다음과 같이 20○○년 상(하)반기 법원 관련 국가(행정)소송사건의 현황을 보고합니다.

구분	국가소송			행정소송		
접수사건	○건			○건		
진행사건	○건			○건		
확정사건	올해 접수	올해 이전 접수	국가패소	올해 접수	올해 이전 접수	행정청패소
	○건	○건	○건	○건	○건	○건
중요사건						
○○법원						

※ 작성요령

1. 접수사건란에는 해당 기간 동안 소송이 제기된 사건 수를 기재함
2. 진행사건란에는 제4조제2항의 일자 기준 미제사건 수를 기재함
3. 확정사건란에는 올해에 접수되어 해당 기간 동안 확정된 사건 수와 올해 이전에 접수되어 해당 기간 동안 확정된 사건 수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전체 확정된 사건 중 국가(행정청)패소 사건 수를 기재함. 이때 패소는 일부 패소를 포함함
4. 중요사건란에는 국가(행정청)패소 사건, 소가가 10억 원 이상인 사건(소 제기 시 기준), 국가(행정청) 패소 시 법원에 미치는 영향이 클 사건으로 사전번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한 사건의 사건번호를 각 기재함
5. 소송수행진담팀의 경우 사건 수 및 중요사건을 「소송수행진담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송 관련 법원(지원)별로 구분하여 기재함

개정안

사건번호	○○법원 ○○호				
사건명					
원고			피고		
소송물가액			관련기관		
접수일자	1심		상소심		
※ 국가소송의 경우 청구원인을 확인한 후 아래 사건 구분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복체크 가능).					
사건구분	민사(행·선정)	등기()	공탁()	재판관련()	기타()
소송종료결과	판결선고	선고일자	판결문송달일		
		판결요지	상소확정 여부		
	상소의견				
	소취하, 조정 기타	종료원인	종료일자		
구상권 행사	행사 여부 (대상자, 방법)	행사금액			
첨부서류					
소송주행자 소속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국가(행정)소송 현황 보고

수신 법원행정처장

참조 법무담당관

제목 국가(행정)소송 현황보고

다음과 같이 20○○년 상(하)반기 법원 관련 국가(행정)소송사건의 현황을 보고합니다.

구분	국가소송			행정소송		
접수사건	○건			○건		
진행사건	○건			○건		
확정사건	올해 접수	올해 이전 접수	국가패소	올해 접수	올해 이전 접수	행정청패소
	○건	○건	○건	○건	○건	○건
중요사건						
○○법원						

※ 작성요령

1. 접수사건란에는 해당 기간 동안 소송이 제기된 사건 수를 기재함
2. 진행사건란에는 제4조제2항의 일자 기준 미제사건 수를 기재함
3. 확정사건란에는 올해에 접수되어 해당 기간 동안 확정된 사건 수와 올해 이전에 접수되어 해당 기간 동안 확정된 사건 수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전체 확정된 사건 중 국가(행정청)패소 사건 수를 기재함. 이때 패소는 일부 패소를 포함함
4. 중요사건란에는 국가(행정청)패소 사건, 소가가 10억 원 이상인 사건(소 제기 시 기준), 국가(행정청) 패소 시 법원에 미치는 영향이 클 사건으로 사전번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한 사건의 사건번호를 각 기재함
5. 소송수행진담팀의 경우 사건 수 및 중요사건을 「소송수행진담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송 관련 법원(지원)별로 구분하여 기재함

◎ 대법원예규문서 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80호 2019. 2. 21. 결재)

대법원예규문서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기획재2심의관실”을 “법무담당관실”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송부대상) 대법원예규문서의 관리번호(이하 “관리번호”라 한다)는 대법원예규문서를 관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주무과”라 한다)에서 부여하며, 주무과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제4조(송부대상) ----- ----- ----- -----</p>
<p>1. 행정예규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 제2십의관실</p> <p>2. ~ 4.호 (생 략)</p>	<p>1. ----- 법문 담당관실</p> <p>2. ~ 4.호 (현행과 같음)</p>

● 신법령 목록 (2019. 2. 1. ~ 2. 15.)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조약】				
조약제2408호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양국 국민에 대한입국사증 발급 간소화에 관한 양해각서	2019. 2. 11	19436	4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9508호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19. 2. 8	19435	4
대통령령제29509호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
대통령령제29510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7
대통령령제29511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
대통령령제29512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0
대통령령제29513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5
대통령령제29514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	28
대통령령제29515호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5
대통령령제29516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6
대통령령제29517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3
대통령령제29518호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4
대통령령제29519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7
대통령령제29520호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8
대통령령제29521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0
대통령령제2952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9. 2. 12	19437	4
대통령령제29524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2
대통령령제29525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5
대통령령제29526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	"	31
대통령령제2952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2

대통령령제29528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9. 2. 12	19437	96
대통령령제29529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7
대통령령제29530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2
대통령령제29531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56
대통령령제29532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58
대통령령제2953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60
대통령령제29534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69
대통령령제2953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75
대통령령제29536호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82
대통령령제29537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83
대통령령제29538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84
대통령령제29539호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85
대통령령제29540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86
대통령령제29541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	"	187
대통령령제29542호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89
대통령령제29543호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91
대통령령제29544호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	"	192
대통령령제2954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93
대통령령제29546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	"	194
대통령령제29547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01
대통령령제29548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02
대통령령제29549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03
대통령령제2955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04
대통령령제2955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07
대통령령제29552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10
대통령령제29553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 부개정령	"	"	210

【총리령】

총리령제1521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9. 2. 11	19436	8
총리령제1522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2. 15	19440	5

【부령】

교육부령제170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	2019. 2. 1	19433	5
법무부령제945호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	"	"	5
국토교통부령제591호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2. 7	19434	3
기획재정부령제70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2. 8	19435	5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22호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3
행정안전부령제98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5
행정안전부령제99호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4
행정안전부령제100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40
산업통상자원부령제32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41
보건복지부령제615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56
국토교통부령제592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57
기획재정부령제70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2. 11	19436	8
해양수산부령제325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
고용노동부령제244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2. 12	19437	212
국토교통부령제593호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19
환경부령제799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19. 2. 13	19438	3
해양수산부령제326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20
산업통상자원부령제32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	"	91
행정안전부령제101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2. 14	19439	4
환경부령제800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
국토교통부령제595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2. 15	19440	8
해양수산부령제327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
농림축산식품부령제357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

